

2026년 제2회 대구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대구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조리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7. 22.

대구교도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근로형태	채용분야	선발인원	채용예정일
대구교도소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2명	'26년 9월 중

※ 채용 예정일은 채용 절차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담당예정 직무

- 음식 재료관리 및 조리
- 직원식당 위생 및 환경관리 등

3. 근무 시간

- 주간 2교대 근무
 - 조간 근무 : 06:00~15:0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주간 근무 : 09:30~18: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 근무 특성상 조기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음.(계약서에 의함)
-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포함)에도 필요시 휴일근무 할 수 있음.(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 수당지급)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 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
-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지역 제한 : 제한 없음
- 휴일근무가 가능하고 근무체계(주간 2교대)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6.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

공무직 (조리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상위 1개만 인정)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 능 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조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조리’ 분야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조리’ 분야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 인정은 소득금액증명원,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 세 가지 모두 제출하고 제출서류에서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우대사항은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만 적용함

7. 가점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이내 가산

※ 가점 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증빙서류 확인 등)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 적용)

※ 가점 사항은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만 적용

8. 급여 및 후생복지

- 보수 수준 : 2,155,880원(세전,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 정액급식비 : 매월 160,000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 연 2회
- '26년 기본급 기준 1회 지급액 : 1,293,530원

- 맞춤형복지비 : 500,000원 × 연 1회
- 명절휴가비 및 맞춤형복지비 제공 (연 160만원 상당)
-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 **처우 개선사항(2026년)**
 - (기본급 인상) 전년 대비 3.8% 인상
 - (정액급식비 인상)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14만원→16만원)
 - (명절휴가비 인상) 그간 연 2회 550,000원씩 정액 지급하던 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 2회 기본급의 60%씩으로 인상
※ '26년 기본급 기준 1회 지급액 : 1,293,530원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전원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응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인 경우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적극적 서류전형)

구 분	주요 내용	배점
자기소개서	- 소통·화합 능력 - 지원동기,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성실성·책임감 - 업무성취 경험 등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60점
지원 분야 경력	- 조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조리’ 관련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세 가지 모두 제출해야 인정	20점
지원 분야 자격증	- 해당 분야 자격증 가점 (상위자격 1개 인정, 자격증별 차등 배점)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능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20점
가산점	사회 형평 가점	3%
	법정 가점	10%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4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 4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다. 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10.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26. 7. 22.(수) ~ 7. 31.(금)	'26. 7. 29.(수) ~ 7. 31.(금)	'26. 8. 7.(금)	'26. 8. 13.(목) 14:00	'26. 8. 20.(목)

※ 임용일은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지역 채용 네트워크 워크넷(www.work.go.kr)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 법무부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나.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 '26. 7. 29.(수) ~ 7. 31.(금), 09:00 ~ 18:00
- 본인 및 대리자 직접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대구교도소 총무과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로 204
 - 전화번호: 053) 430 - 1617 ~ 1618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공통 필수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공통 필수
7.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7호)	○ 공통 필수
8.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별지서식 제8호)	○ 공통 필수
9.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0.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 남성은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1.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경력 ○ 근무기간(연·월)·직위(급)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 기재사항과 이력서 내용을 일치
12.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관련 업무 경력 제출자에 한함
13.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 관련 업무 경력 제출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나.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9>을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서류 반환 청구 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간)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구 분	유 의 사 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13.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대구교도소 총무과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도소 총무과(☎ 053-430-1600 내선 203, 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 . .	대구교도소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 출 여 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⑩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⑪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1부 (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⑫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⑬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본인은 대구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2회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대구교도소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대구교도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공무원직근로자(조리원)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분야	공 무 직 근 로 자 (조 리 원)	성명 (한자)		
주소				연락처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생년 월일		

나. 응시요건			
응 시 요 건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응시연령	복수국적
	☐ 있음 ☐ 없음	☐ 20세 이상 ☐ 20세 미만	☐ 예 ☐ 아니오

다. 관련 경력 등 요건				
관 련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조리원
- ③ 현주소, 연락처, 병역사항,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나. 응시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다. 관련 경력 등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① 관련경력 : 조리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 기재
- ② 자격증 : 조리사 자격증 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기재사항은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자 기 소 개 서

☐ 응시기관 : 대구교도소	☐ 채용분야 : 공무원근로자(조리원)
☐ 성 명 :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무부에서는 공무원근로자(조리원) 채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 등</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인		미공인	
----	--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자료</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이	이	이
---	---	---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치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법무부</u> <u>교정본부</u>	<u>시험 응시자격</u> <u>정지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u>5년</u>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table><tr><td>있음</td><td></td></tr></table>	있음		<table><tr><td>없음</td><td></td></tr></table>	없음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u>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u> —	<table><tr><td>해당</td><td></td></tr></table>	해당		<table><tr><td>비해당</td><td></td></tr></table>	비해당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u> —	<table><tr><td>해당</td><td></td></tr></table>	해당		<table><tr><td>비해당</td><td></td></tr></table>	비해당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 대구교도소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 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 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대구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